

제274회 임시회
'08. 9. 26(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



건설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2008. 9. 26.
건설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9월 9일

○ 회부일자 : 2008년 9월 12일

상정일자 :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8. 9. 23 :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제안 이유

○ 미래 충북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충청북도문화헌장”의 실효성
확보와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충청북도 문화현장”은 도민의 문화권리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주 내용으로 함(안 제2조)
 - 전문은 현장의 기본이념
 - 항목은 전문에 포함된 현장정신의 구체적인 사항
- 문화현장의 실천(안 제3조)
- 문화현장의 활용(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문화전문위원 윤영해)

- 충청북도 문화현장 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 미래충북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 문화선진도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현장의 실효성 확보와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문화현장 운영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문화현장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문화사회를 지향하며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천규범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충청북도 문화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현장) 충청북도 문화현장(이하 “문화현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문화현장 실천)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문화현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문화현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에 문화현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문화현장을 낭독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

- 1.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 표]

충청북도 문화헌장(제2조 관련)

맑은 바람 백두대간으로 흘러내리고 서편에 해가 지면 동편에 밝은 달이 솟는다. 청풍명월(淸風明月)로 문화를 닦고 흥과 신명으로 예술을 가꾼 여기는 대한의 중앙, 충청북도다. 예로부터 온유하면서도 강직했던 충북인들은 유달리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여 증원문화를 꽃피웠다.

홍익인간의 사상과 하늘의 은혜로 세상이 열린 후 선사와 고대를 지나 삼국시대에 충북은 융합소통의 중심지였다.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충북인들의 온화한 품성과 형형한 기백은 한국문명의 빛이 되었다. 충북문화에는 중용과 합리의 보편성과 올곧은 선비정신이 담겨 있으며 우륵과 난제의 예술혼이 빛나고 직지(直指)의 창의성과 의병, 동학, 삼일운동 사상이 녹아 있다.

목련과 모란이 어울려 아름다운 것과 같이 모든 국가와 민족의 다양한 문화는 소중하다. 충북인들은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번영과 평화를 이루고 차별과 소외를 없애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을 희망한다.

이제 충북인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살리면서 한국문화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다. 선진문화를 소망하는 충북인들은 문화헌장을 하늘북 삼아 성숙한 문화사회로 나아가며 통일한국이 문화국가가 되고 지구촌이 문화세계를 이루는 여정을 시작한다.

- 1.(창조적 참여) 도민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행위에 창조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2.(문화민주주의) 도민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유익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창작 주체이다.
- 3.(표현의 자유) 도민은 지식과 정보, 예술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4.(문화소외) 문화소외자는 정체성과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과 지지를 받으며 주류적 가치와 관습, 특정한 태도 등을 강요받지 않는다.
- 5.(미디어 접근권) 도민은 새롭고 다양한 미디어를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6.(문화다양성) 도민은 국내·외 지역문화가 충북문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이해하며 가치를 공유한다.
- 7.(충북문화 계승) 충청북도 문화유산은 보존하며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 8.(문화예술진흥) 충청북도 및 시·군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지원한다.
- 9.(공·사적 의무) 충청북도내 공공기관과 단체 및 기업, 도민은 문화적, 정서적 풍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10.(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콘텐츠의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 11.(문화정책) 충청북도, 시·군 및 관련 기관의 문화정책은 우선되어야 하며 도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The Chungcheongbukdo Culture Charter

Clear winds blow along the Baekdudaegan mountains. When the sun sets in the west, the bright moon rises in the east. Here, where culture was cultivated with the clear winds and bright moon and art was enriched with merriment and mirth, is the center of Korea, Chungcheongbukdo. People of Chungbuk, with their mild and integral dispositions, especially loved the culture and arts which brilliantly flourished in the Jungwon Culture.

After the world had opened along the thoughts of Hongigigan and with the blessing of Heaven, and had passed through the pre-historic and ancient ages, Chungbuk had become the geographical heart of amalga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age of The Three Kingdoms. In the medieval times, as in Goryeo and Joseon, Chungbuk people's tender disposition and shining spirit formed a light of Korean civilization. In the Chungbuk culture of temperance, universal discretion and the spirit of upright, wise and gentle people, Nangye and Ureuk's artistic souls shine, and the creative spirit of Jikji merges with the ideas of Ubyeong, Donghak, and Samirundong.

Diverse cultures of all states and nations are precious, just as the harmonious flowers of magnolia and peony are beautiful. People of Chungbuk will make a thriving and peaceful society based on the ideas of sharing and concern, and will get rid of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to realize an equitable world where all creatures will be respected.

Now, people of Chungbuk, advancing their wisdom of co-prosperity, harmony and mutual respect, will subjectively make an effort for Korean culture. People of Chungbuk, wishing for progressive culture, will journey towards the blossoming cultural society, towards the cultural state of the unified Korea and towards the cultural world of this planet with this Culture Charter as Heaven's drum.

1. **(Creative Participation)** The Provincial people shall participate in various cultural practices creatively and actively.
2. **(Cultural Democracy)** The Provincial people shall be the subject of creation in everyday life enjoying cultural benefits and pleasures.
3. **(Freedom of Expression)** The Provincial people can freely express their knowledge, information, arts and relating values.
4. **(Cultural Isolation)** The culturally isolated minority shall be supported so that their identity and self-esteem will not be impaired, and the minority shall not be forced to accept the values, customs or certain behaviour of the majority.
5. **(Media Access Right)** The Provincial people shall, on an equal basis, have the right to use new and various media.
6. **(Cultural Diversity)** The Provincial people recognize all the regional cultures to have the same value as that of Chungbuk, communicating and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and sharing their cultural values.
7. **(Inheritance of Chungbuk Culture)** The Chungcheongbukdo shall preserve its cultural heritage and inherit creatively for its development.
8. **(Advancement of Arts and Culture)** The Chungcheongbukdo, cities and counties shall support the organizations and people relating to arts and culture in order for advancement of arts and culture.
9. **(Public and Private Duties)** Public agencies, organizations, companies in the Chungcheongbukdo and Provincial people shall have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for cultural and emotional affluence.
10. **(Cultural Industry)** Cultural Industry shall pursue economic values along with recognizing the cultural exception in contents.
11. **(Cultural Policy)** The Chungcheongbukdo, cities, counties and relating agencies shall put their priority on cultural policies and provide their benefits to all the provincial people on a universal basis.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